#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52 발의연월일: 2021. 5. 24.

발 의 자:정성호·송재호·소병훈

윤관석 • 기동민 • 맹성규

양향자 • 고용진 • 박홍근

이용호 · 김병욱 · 이규민

서영석 • 백혜련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관세를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 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미화 1,000달러이하의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반품 확인서류 제출만으로 환급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 지침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시행하는 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출신고 생략범위 또한 협소한 실정임.

한편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일반 면세점과는 달리 관세 환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급이 불가함.

이에 FOB 200만원 이하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서 류 제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또는 선상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법률 제 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106조의2제2항 중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를 "구입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 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
- 2.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신신고한 물품이 해당 국제무역선내 또는 국제무역기내 판매자에게 환불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 한다.
- 제3조(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의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	대한 관세 환급) ①
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	
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1조제2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
	<u> </u>
② 여행자가 <u>제196조에 따른</u>	② 구입한 물품이 다음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 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lt;신 설&gt;</u>	1.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
	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
	<u>는 경우</u>
<u> &lt;신 설&gt;</u>	2.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u>안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u>
	96조제2항에 따라 자신신고한
	물품이 해당 국제무역선내 또
	는 국제무역기내 판매자에게
	환불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